

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(제16조 관련)

1. 선박평형수처리설비

- 가. 위험한 속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보가 발생되도록 선박평형수 통제 구역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.
- 다. 마모 또는 손상되기 쉬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작동부위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, 일상적인 정비 및 고장해결 절차는 제조자의 운전 및 정비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, 정비 및 수리 등 기록사항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.
- 라. 다목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부분 외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모든 부분에는 봉인을 파괴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소제, 교정 또는 수리를 위해 운전될 때마다 볼 수 있는 경고가 작동되고, 이러한 결과들이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.
- 바. 비상 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우회 배관(by-pass)이나 경로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경보부작동(override)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사.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여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하는 때에는 경보가 작동되어야 하고, 이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.
- 아. 검사 시에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측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고, 이들 설비의 교정성적서는 검사목적으로 선박에 비치되어야 하며, 제조자 또는 제조자에 의해 인가된 사람만이 정밀점검을 수행해야 한다.
- 자. 처리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 - 1) 처리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 - 가) 선상(on board)에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하고 견고한 것일 것
 - 나) 제13조의 기준에 적합한 설계 및 구조일 것
 - 다) 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될 것
 - 라) 고온 표면 부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
 - 마)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, 장치의 목적, 작업조건 및 그 밖에 선상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
 - 2) 처리장치에는 운전 및 제어를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,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시설들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 확보될 수

있도록 제어장치와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3) 처리장치가 가연성(可燃性)이 있는 곳에 설치될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.

가) 처리장치는 해당 장소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

나) 전기장치는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할 것. 다만, 위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사용을 인정하여야 하며,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는 구동부분은 정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
차 제어 및 감시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)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처리에 필요한 투여량(dosages), 강도(intensities) 및 그 밖에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처리의 적절한 관리(administration)를 위하여 제어가 요구되는 다른 요소(aspects)를 자동으로 조절 및 감시하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2) 제어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운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연속적인 자기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3) 감시장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오작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
4) 제어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가)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와 적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24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을 것

나) 검사를 위하여 기록을 보여줄 수 있거나 출력할 수 있을 것

다) 제어장치를 교체할 경우, 교체전의 저장된 자료가 선상에서 24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도록 저장 가능할 것

5) 제어장치 계기가 측정한 값의 변화, 제어장치의 반복성(repeatability: 동일한 측정대상을 같은 조건 하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한 경우 개개의 측정치가 일치하는 성질) 및 제어장치 계기의 영점화(re-zero)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을 선상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선박평형수교환설비

가. 선박평형수 펌프 및 관장치는 운전, 정비 및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.

나. 선박평형수 주입 또는 배출에 대한 자동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기록은 쉽게 저장되고 확인 가능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.

※ 비고

1. "처리장치"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.
2. "제어장치"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운전 및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말한다.
3. "감시장치"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.